

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6. 14.

발 의 자 : 함명섭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.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 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1조)
- 나.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3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하고 필요한참고자료”를 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상당”을 “적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동일기관”을 “동일한 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인정한 때”를 “인정한 경우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있을경우”를 “있을 경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인정하는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 의원”을 “해당 의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아니한 때”를 “아니한 경우”로, “정하는 바에따”를 “정하는 바에 따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있다.</p>	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적당----- -----.</p>

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3.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
4. (생략)

제5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 ~ ③ (생략)

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동일한 기관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이의신청) ①-----
----- 따라 -----

-----.

②----- 따른
----- 인정한
경우-----
-----.

-----.

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소개위원의 취지설명)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략)

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

④-----
----- 없을 때에
는 -----

제7조(소개위원의 취지설명) ---

----- 있을 경우
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인정하는
경우-----

③----- 해당
의원-----

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(생략)
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징계) -----

따른 -----
----- 아니한 경우

----- 정하는 바에 따-
-----.